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연 월 일	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재해유족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이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그 유족에게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법률 제19786호, 2023. 10. 31. 공포, 2024. 5. 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정하고 별지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 규정(안 제14조의2)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위해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제출 절차와 신청서 별지 서식을 명시함.

나. 착오지급 방지를 위해 상이연금 청구서 서식에 타 직역 연금 기 수급 여부 확인란 신설 (안 별지 제5호서식)

다.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에 시행령의 처리기한(30일)과 상이하게 표기된 처리기한 수정(14일 → 30일) (안 별지 제10호서식)

라.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제30호 서식)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00. 00. ~ 2024. 00. 00.)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영 제46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14일”을 “30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이연금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4개월
청구인 기재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택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휴대전화 문자 수신 여부 [] 예 [] 아니요
	주소		
	급여 수령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계급·호봉		군번
	형벌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 진행 중 [] 형사재판 진행 중 [] 형 확정 (형명:) (확정일: . . .) (형량:)	
	퇴직 당시 소속 부대명		퇴직 연월일
	학자금 대부 [] 있음 [] 없음	미납액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분할상환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급 여부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미수급			

소속 부대 기재란	공무상	부상·질병 장소		장해 상태		
	부상·질병	제3자 가해사실 [] 있음 [] 없음		상이등급 급 항		
	형벌사항 [] 있음 [] 없음	[] 수사 진행 중 [] 형사재판 진행 중 [] 형 확정 (형명:) (확정일: . . .) (형량:)				
	대부사항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미납액	미납액 상환방법
	[] 있음	전세대부				[] 일시상환
	[] 없음					[] 분할상환
확인자	인사 담당자	계급	성명	(인)	전화번호: ()	-
	()군 제 부대 장 직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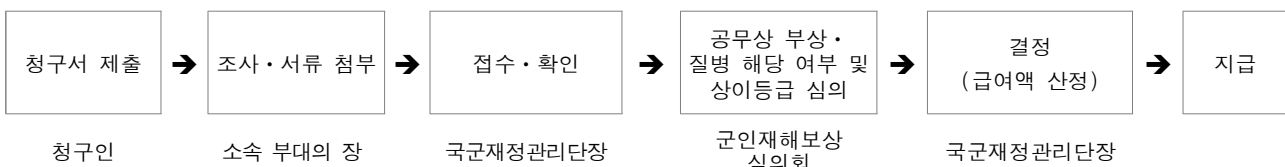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첨부서류	청구인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급여계좌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1부	수수료 없음
	소속 부대장	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 1부 2. 상이등급이 적힌 군병원의 장이 발행한 진단서 1부	

작성방법

1. 청구인 기재란의 주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적으십시오.
2. 급여 수령 금융회사는 반드시 국내 은행 또는 국내에 지점이 있는 은행 등이어야 합니다.
3. 청구인 기재란의 계좌번호란에는 첨부하신 실명확인통장 사본의 계좌번호를 적으십시오.
4. 청구인 기재란의 형벌사항란과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에는 있음·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고,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로 형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 진행 중·형사재판 진행 중·형 확정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소속 부대 기재란의 형벌사항란을 작성하는 경우 소속 부대의 인사담당자는 형벌사항을 따로 조사·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5. 소속 부대 기재란의 공무상 부상·질병란은 제3자의 가해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해 경위 조사서에 가해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적으십시오.
6. 소속 부대 기재란의 대부사항란은 있음·없음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한 후 미납된 대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 대부액, 상환액 및 미납액을 적으십시오. 이 경우 미납액 상환방법은 청구인이 희망하는 상환방법을 확인하여 일시 상환·분할상환 중 해당하는 [] 안에 “√” 표시를 하십시오.
※ 청구인의 휴대전화번호는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자택 전화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적으십시오.

처리절차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개월	
급여선택		[] 상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사망보상금					
사 망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퇴직연월일			① 사망연월일			
급 여 제 한 심 의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② 관 계	사망자의 ()					
제 한 유 형	※ 해당되는 제한 유형에 “✓” 표시하십시오.						
	[] 재해유족급여 신규 청구 시 다른 유족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 기존 수급자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 기존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에 따라 수급권 이전 신청 시 다른 유족에 대해 급여제한 신청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③주소(우편물 수령지) ※ 도로명(새길) 주소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휴대전화			자택전화		
		e-mail					
	② 관 계	사망자의 ()					
	유 족 ※ 유족대표자 포함	번호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④장해 유무	유족대표자여부
		1			-	[] 있음	[]
		2			-	[] 있음	[]
		3			-	[] 있음	[]
		4			-	[] 있음	[]
⑤ 신 청 이 유	[작성 방식] 급여제한 심의대상자가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시점포함)과 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사용 가능)						
	「군인 재해보상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유족급여 제한을 신청합니다.						
국군재정관리단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방법

- ①란의 사망연월일은 퇴직발령 후 사망한 경우에 추가 기재하십시오.
- ②란의 사망자와의 관계는 사망자를 기준으로 배우자·자녀·부모 등을 기재하십시오.
- ③란은 급여제한 관련 안내를 위해 반드시 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기입하여 주십시오.
- ④란은 사망자의 장해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하여 주십시오.
 - 군인 등이 사망할 당시 자녀의 장해 상태가 「군인 재해보상법」 상 상이등급 제1급에서 제7급까지에 해당 시 25세 이상이라도 유족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상이등급 판정은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상이등급이 결정됩니다.
- ⑤란은 급여제한대상자가 군인 등에 대해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위나 배경,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시점 포함)과 정도 등에 대해 작성하여 주십시오.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7] 군인 등에 대한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 군인 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생후부터 19세가 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동안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 하였거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는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
- 군인 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
- 군인 등이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군인 등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위반한 정도

첨부서류 안내

신청인 신분확인	1.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사망자의 배우자·부·모·25세미만자녀의 경우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유족인 배우자가 25세미만 자녀의 대표자로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배우자가 청구하는 경우 사망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25세이상 장해자녀의 경우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추후 확정, 신청시 미제출) - 조부모 : 망인 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 25세미만 손자녀 : 망인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 양부모·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이 단독친권으로 지정되어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정) 추가 첨부 ※ 유족이 25세이상 장해자녀, 손자녀·조부모의 경우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에는 부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부양사실인정예규」 별표1) 2. 유족대표자 선정서 1부. -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및 자필서명을 첨부
양육책임 이행여부	3. 미성년이었던 기간 동안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예시) 각 1부. ① 주소를 같이 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② 경제적인 지원을 한 기간 및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 통장 사본 등 ③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범죄행위,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모로서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사소송 판결문 등) ④ 기타 양육책임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망자의 유언, 형제자매 확인서, 인우보증서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4조의2(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재해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영 제46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